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19

발의연월일: 2025. 3. 4.

발 의 자:윤준병·박홍배·박희승

김한규 • 민병덕 • 김민석

장철민 · 조계원 · 문진석

이춘석ㆍ허 영ㆍ신영대

백선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실제수명 저감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재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0조제5항·제6항 신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 ⑨ 제8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료 및 관계시설(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허가하려는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등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설허가) ① ~ ⑦ (생	제10조(건설허가) ① ~ ⑦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⑧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의 지역주민(이하 "지역주민"이
	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u><신 설></u>	⑨ 제8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
	<u>상계획구역(이하 "방사선비상</u>
	계획구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
	<u>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u>
	<u> 자치도지사</u>

<신 설>

제20조(운영허가)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 10 제8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운영허가) ① ~ ④ (현행 과 같음)
 - ⑤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료 및 관계시설(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허가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설계수명기간이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등 허가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